

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 9. 14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8월 19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9월 1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55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0. 9. 7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재정경제국장 안동수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영등포구의회의 의결 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영등포구 신길동 133-1등 2필지 토지 매각

(단위 : 천원)

위치	면적	지목	소유자	매각가격
계	627m ²			3,046,543
신길동 133-1	208m ²	대지	영등포구	1,007,864
신길동 136-1	419m ²	대지	영등포구	2,030,264
감정평가 수수료				8,415

- 매수 신청자 : 국방부(해군재정근무지원단).
- 이용현황 : 국방부(해군재정근무지원단) 소유의 층무아파트 등으로 점유되어 있음.
- 재산관리 현황 : 가로경관과에서 구거부지로 관리, 점용료 부과 중 2010.4.30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 재무과에서 점용료 부과 중.
- 처분방법 : 매각금액 일시납부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이 현 영)

-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국방부 해군재정근무지원단 소유의 층무아파트 등으로 사용 중인 구유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변경안으로, 도로 등 공공용 사용이나 도시계획상 이용 계획도 없으며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폐구거 잡종재산으로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현재 공동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에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제 13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【국방부(해군재경근무지원단) 점유 토지 매각】 현재 국방부(해군재경근무지원단)소유의 건물 등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구거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하고자 함.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)

3.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

- 위 치 : 영등포구 신길동 133-1외 1필지
- 소 유 자 : 영등포구
- 대지면적 : 627m²
- 처분사유 : 현 점유·사용자에게 매각
(신청인 소유의 토지 사이에 위치한 좁고 긴 모양의 폐구거 임)
- 매각금액 : 총 3,046,543,500원

4.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

- 안 건 : 국방부(해군재경근무지원단) 점유 토지 매각
- 요구부서 : 재 무 과
- 심의요구내역

가. 처분 대상

(단위:m²/천원)

처분재산의 표시				매각 면적	매각사유	처분예정가격			비고
소재지	지목	면적	소유자			계	감정평가액	감정평가료	
계		627		627		3,046,543.5	3,038,128.5	8,415.0	
신길동 133-1	대지	208	영등포구	208	점유자에게 매각	1,007,864.0	1,007,864.0	-	
신길동 136-1	대지	419	영등포구	419	점유자에게 매각	2,030,264.5	2,030,264.5	-	

나. 처분사유

국방부(해군재경근무지원단)소유의 건물 등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구거를 해당토지의 소유자에게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하고자 함.

다. 처분방법 : 매각금액 일시납부

라. 처분예정가격 및 산출근거

- 공시지가(3,180,000원) × 면적(208m²) × 감정평가예상율(153%)
- 공시지가(3,180,000원) × 면적(419m²) × 감정평가예상율(153%)
- 감정평가비용(2개업체) = 8,415,00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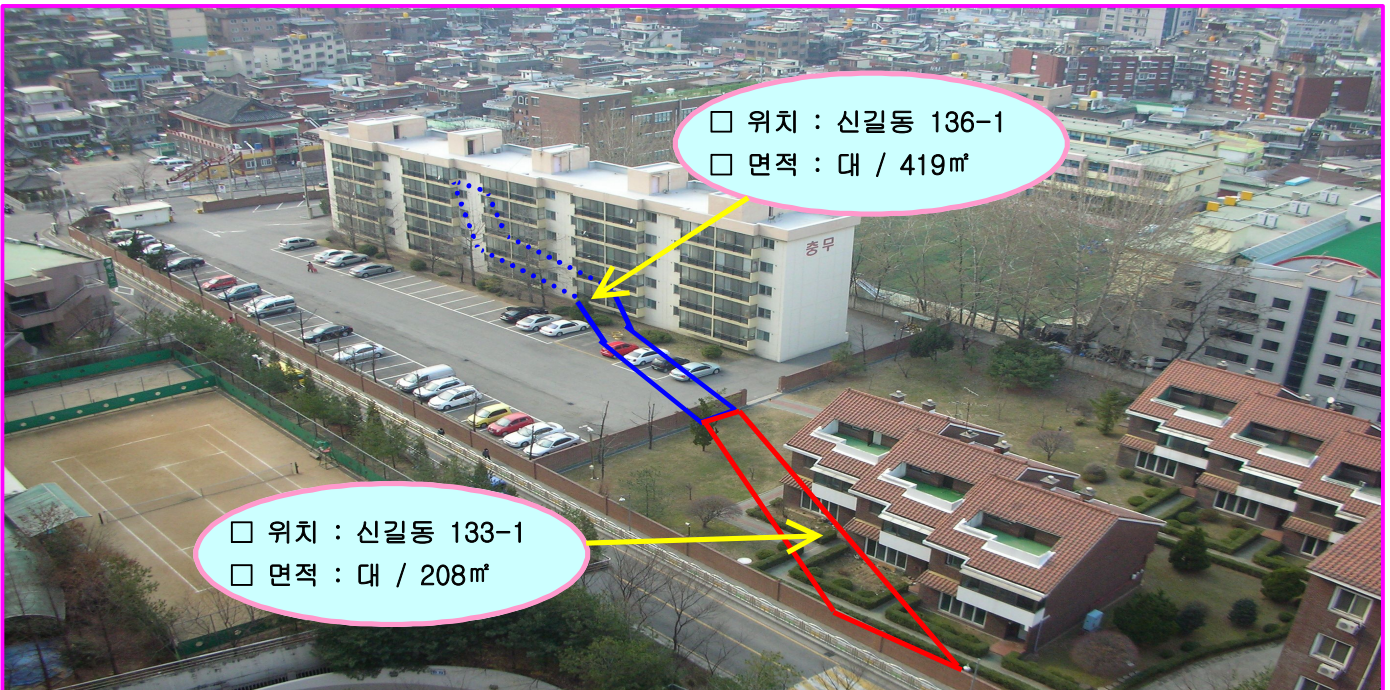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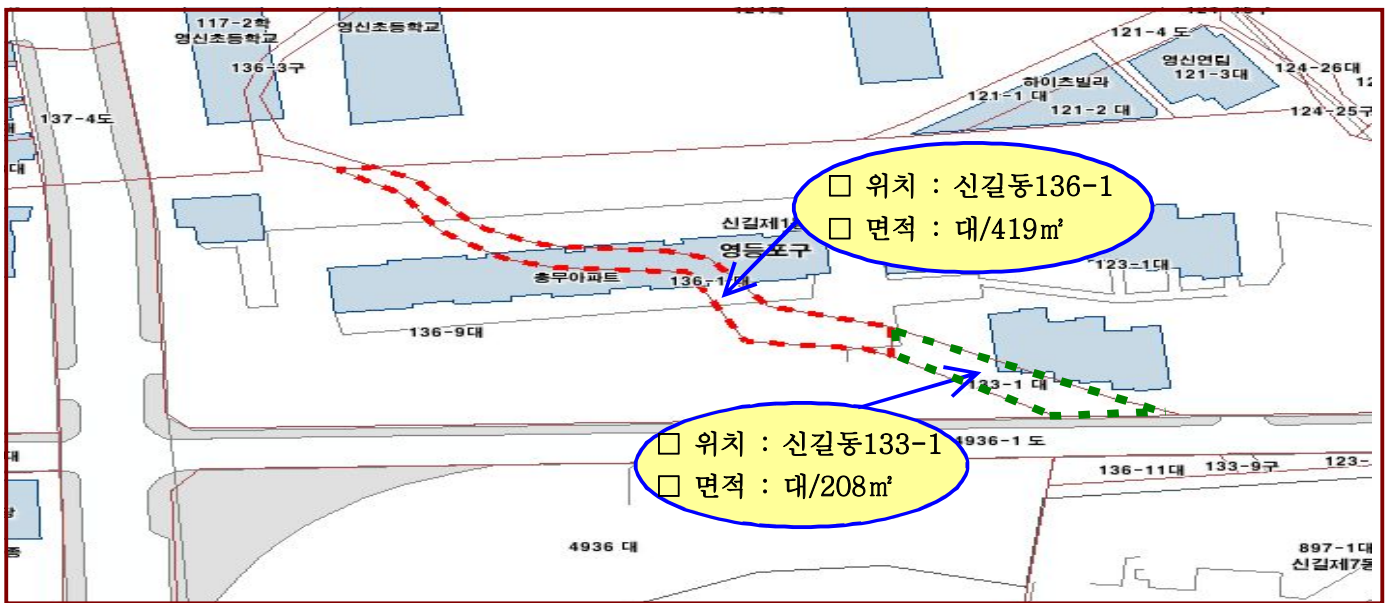
마. 처분시기 : 2010년도 하반기(영등포구 의회 의결 후 매각)

바. 근 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시행령 제7조 제1항

처분 재산 내역

구분	사업별	소재지	처분재산	추정가액(천원)	비고
처분 (토지매각)	토지 점유자에게 매각 (국방부-해군재경근무지원단)	신길동 133-1 외1필지	토지 627㎡	3,046,543.5	일반 회계

위 치 도



2010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

(단위:㎡ /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처분시기	처분사유	비고
	지목	소 재 지	수량				
1	대지	신길동133-1외 1필지	627	3,046,543.5	2010. 하반기	토지 점유자에게 수익매각	부지매각 (구유지)